

대구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202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형

변론 종결 2021. 9. 30.

판결 선고 2021. 11. 4.

주 문

1.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A와 D 사이에 2019. 10.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A는 D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C와 D 사이에 2019. 10.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C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4. 접수 제1457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와 D 사이에 2019.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 B은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22. 접수 제1551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 1) 원고는 2017. 5. 22.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기간 2017. 5. 22.~2018. 5. 21.(이후 2020. 5. 21.까지로 변경),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주)E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2) 한편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 1) D은 2019. 10.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7. 접수 제1104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9. 10. 4.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4. 접수 제1457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은 2019. 10. 2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22. 접수 제1551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D의 연대보증채무

1) (주)E이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11.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12. 23.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7570호)을 받았다.

2) 원고는 2020. 2. 26. F은행에게 (주)E의 대출원리금 합계 229,932,447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주)E과 D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8. "(주)E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932,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20차전3019호)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5. 2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매 등

1) 원고는 D에 대한 또 다른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20차전6804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20. 7. 9.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을 받았고, 주식회사 F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중복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0. 7. 21.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H 중복)을 받았다.

2)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의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7. 29. 인용결정(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4017호)을 받았다.

3) 경매법원은 2021. 8. 2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게는 2순위로 8,800만원을 배당하고,

배당요구권자(대구지방법원 2020차전3019호, 2019카단37570호)인 원고에게는 5순위로 7,011,4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주)E, D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2017. 5. 22. 체결되었고, 2019. 11. 15. (주)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2019. 10.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주)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20. 2. 26. (주)E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1,895,294,650원에 불과하였던 것에 반해 소극재산의 가액은 6,793,745,686원에 달하였으므로,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부동산	470,000,000원	갑 제6호증의 2
2	이 사건 제2부동산	275,284,650원	갑 제9호증
3	경주시 소재 토지, 건물, 기계기구	790,010,000원	갑 제10호증
4	대구 중구 K 소재 L 5층 M호	108,000,000원	갑 제9호증
5	대구 중구 K 소재 L 5층 N호	125,000,000원	갑 제9호증
6	대구 중구 K 소재 L 5층 O호	127,000,000원	갑 제9호증
합계	1,895,294,650원		

1	소액임차인 P	20,000,000원	갑 제12호증
2	근저당권자 Q	300,000,000원	갑 제12호증
3	주식회사 F	243,594,372원	갑 제12호증
4	피고 A	88,000,000원	갑 제12호증
5	서대구세무서	1,133,460원	갑 제12호증
6	R 주식회사	18,948,255원	갑 제12호증
7	S	50,000,000원	갑 제12호증
8	원고	169,926,834원	갑 제12호증
9	원고	2,587,712,884원	갑 제12호증
10	원고	226,945,622원	갑 제12호증
11	주식회사 F	140,860,553원	갑 제12호증
12	T 유한회사	23,204,525원	갑 제12호증
13	주식회사 F	21,424,765원	갑 제12호증
14	한국전력공사	11,748,360원	갑 제12호증
15	U 주식회사	11,462,246원	갑 제12호증
16	경주시	934,760원	갑 제6호증의 3
17	북대구세무서	4,237,270원	갑 제6호증의 4

1	소액임차인 P	20,000,000원	갑 제12호증
18	대구광역시 달서구	798,440원	갑 제6호증의 6
19	대구광역시 중구	2,165,200원	갑 제6호증의 7
20	피고 B	755,000,000원	갑 제6호증의 8
21	남대구세무서	31,260,550원	갑 제6호증의 9
22	대구신용보증재단	33,757,897원	갑 제6호증의 11
23	피고 A	88,000,000원	갑 제6호증의 12
24	V조합	2,561,693원	갑 제6호증의 13
25	V조합	522,900,000원	갑 제6호증의 14
26	피고 C	1,020,000,000원	갑 제7호증
27	기업은행 W지점	36,700,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8	기업은행 X지역	131,863,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9	기업은행 X지역	25,000,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30	기업은행 X지역	73,000,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31	기업은행 X지역	113,000,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32	Y	27,300,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33	Z	10,305,000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합계	6,793,745,686원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만 그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A는 2015. 1.경부터 2019. 8.경까지 D이 운영한 석유류 소매업체인 'AA'에 등유를 공급하였다. 피고 A는 2019. 4.경부터 공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대금이 점차 증가하였는데, 2019. 8. 17.부터는 공급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 등유 공급을 중단하고 미수대금 66,659,399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제1근저당의 설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는 2019. 3.경 및 2019. 8.경 D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대여하였으나 당초 변제기였던 2019. 9. 30.까지 원리금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5억 5,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D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275,284,650원 정도에 불과한데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원인 V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 B는 2017. 10.경부터 2019. 3.경까지 D에게 합계 11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7억 5,500만 원이나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275,284,650원

정도였는데 반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미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10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B 또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제1부동산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A에 대하여 8,8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2021. 7. 29.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위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는 D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사해행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피고 B, C는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훈

판사황윤철

판사남명수

별지

1)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2020. 7. 21.,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대구 중구 K 소재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2020. 10. 23., 경주시 J 소재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2020. 3. 20.이나, 2019. 10. 4.~2019. 10. 22. 이후 위 각 시점까지 위 부동산 등의 가격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에도 위 가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 보증채무(원고 제외), 중복채무일 가능성이 있는 금액, 이자, 가산금 등은 제외하였다.